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는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 (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당 연 직 :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위 촉 직 : 2년

다. 수당 및 여비 :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안 제14조)

라. 관계규정 준용 :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준용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가. 개발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있으며

나. 실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수립등의 행정계획을 제도에 적용

- 행정계획 : 38개 법령 48개 사업
- 개발사업 : 40개 법령 47개 사업

※ 세부 내역 : 붙임과 같음

다. "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해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나. 예산상황 : 없음

다. 기 타

(1) 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사전협의(승인)사항 :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성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성주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인 부군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 로 한다.

제3조 (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수당과 여비)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 행정계획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국토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폐광지역개발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8)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지정 전
	(9)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농어촌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3)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농어촌주택 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5)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산업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직적활성화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산업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지정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6)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	단지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지정 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시)
다.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전
	(2)도시철도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계획 확정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시)
	(3)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항공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라. 하천의 이용및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2)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4)소하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 승인 전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어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항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계획 수립 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관계시도지사및관계행정기관의장고 협의 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과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과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4)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수립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7)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채광계획 인가 전
	(8)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시)
	(2)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지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 개발사업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개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 시
	(5)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학교설립 인가 전
	(9)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 결정 전
	(10)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계획 승인 전 또는 수립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전 또는 승인전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사업계획 확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4)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산업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 승인 전
	(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센터 지정 전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1)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도시철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공사 시행 전
	(5)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의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소하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수립 확정 전 또는 허가 전
	(2)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3)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4km이상)**	임도 설치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하천골재의 한함)**	허가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허가 전
	(6)석탄산업법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사업계획 확정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채취 허가 전
아.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